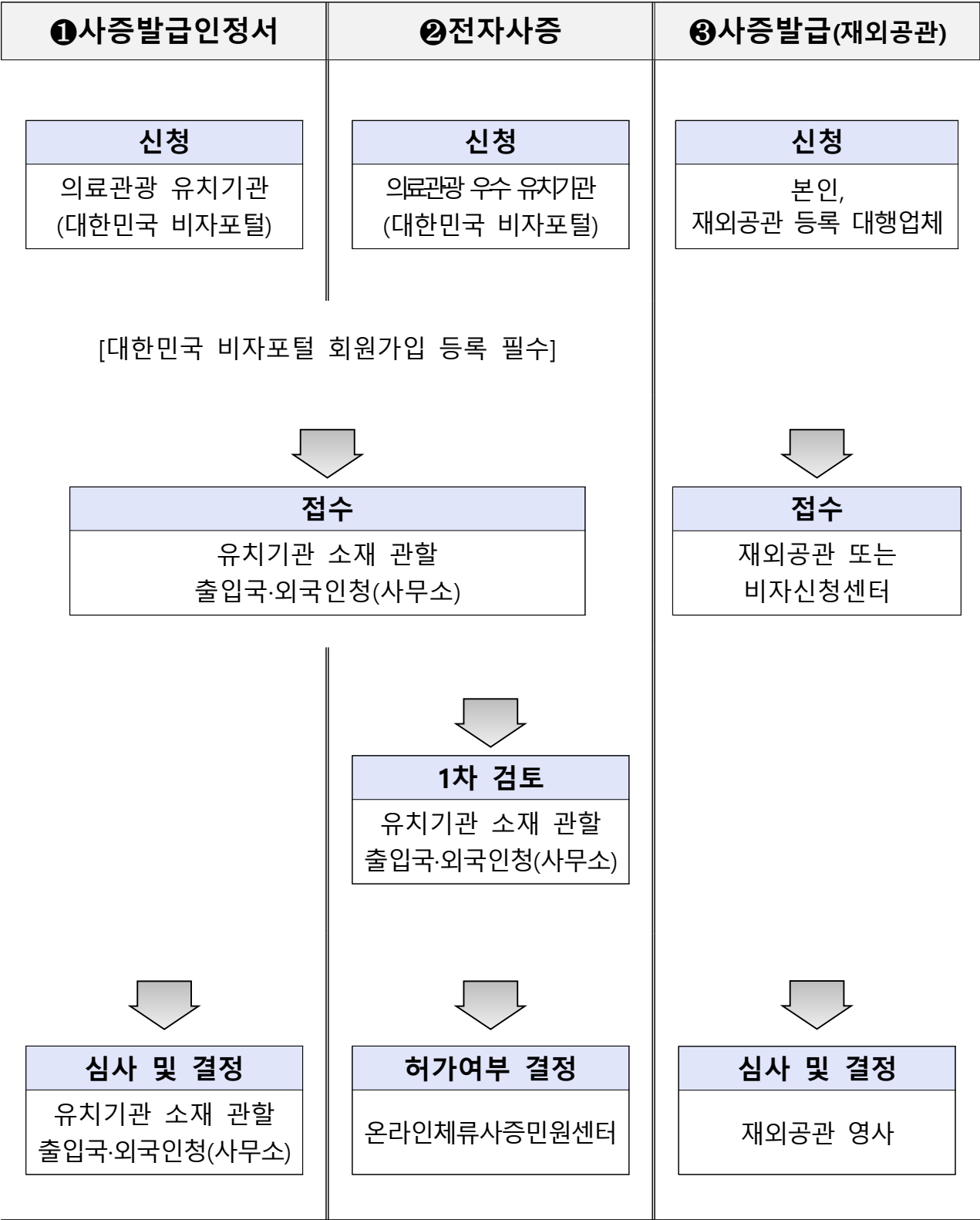


# 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등

## 1. 비자(사증) 업무처리 개요



## 2. 대한민국 비자포털 신청 절차

### ① 회원가입 신청

- 비자포털([www.visa.go.kr](http://www.visa.go.kr))에 접속,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(스캔)로 등재·신청
-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가능
- 재가입 제한기간이 경과한 유치기관이 기존 비자포털 아이디를 계속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만 허용
- ※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이 회원가입 심사, 전자사증신청 검토, 사증발급인정서 심사

#### 【 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】

- ① '외국인환자 유치기관'이 포함된 기업회원 가입 메뉴를 선택
- ② 회원약관, 개인정보 취급방침,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에 동의
- ③ 사업자등록정보\*, 기업정보,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
  - \* 비자포털 ID 및 비밀번호, 사업장명(상호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의 종류,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 정보
- ④ 사업자등록증, 유치기관 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

### ② 제출서류

-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, 고용계약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\*

\* 붙임 1의 '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'로 갈음

### ③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절차

- 유치기관 휴·폐업, 대표자·전담직원 변경 시, 15일 이내에 비자포털에서 유치기관 회원정보(사업자/담당자 변경) 반드시 변경
  - 단, 대표자·전담 직원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
-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, 대표자, 전담직원, 사업장명 등을 변경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료관광 유치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변경 가능
- (기타사항) 기존 타사무소 회원가입자가 관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에 준하여 유치기관 심사

### 3.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혜택

| 구 분        |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 유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증신청 방법    | 비자포털(visa.go.kr)에서<br><u>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사증 신청</u> 을 통해 외국인 초청<br>※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발급 | 비자포털(visa.go.kr)에서<br><u>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</u> 을 통해 외국인 초청<br>※ 재외공관에 해당 비자 신청 |
| 제출서류       | 외국인 재정입증서류 <u>생략 가능</u><br>(전자사증 신청 시에만 적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인 재정입증서류 <u>제출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간병인 및 동반가족 | <u>4촌 이내</u> 방계가족 허용<br>(전자사증 신청 시에만 적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직계가족 및 형제자매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무부 지정증서   | <u>1년 간</u> 유효한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3개월 이상 정지 처분 이상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우수 유치기관 자격 취소